

의안번호	2219711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6.9.11.
추계번호	26C3279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·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총 20억 8,000만원~268억 3,000만원(연평균 4억 1,600만원~53억 6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본 추계는 진료기록부등을 각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휴·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할 때 발생하는 이관 비용만을 포함하며, 이관 물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이관을 위한 EMR 제품 개발비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위 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시나리오 1: 휴·폐업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 전수 이관							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40조의2·3)	416	416	416	416	416	2,080	416
시나리오 2: 휴·폐업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 전수 이관							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안 제40조의2·3)	5,366	5,366	5,366	5,366	5,366	26,830	5,366

주: 본 추계는 진료기록부등을 각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휴·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할 때 발생하는 이관 비용만을 포함하며, 이관 물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이관을 위한 EMR 제품 개발비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위 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의2 (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,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, <u>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</u>,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음(제2항) -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항목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추가	재량규정
2	안 제40조의2 (진료기록부등의 이관)	-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<u>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(제1항)</u> -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·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40조의3 (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·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<u>보건소장이</u>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·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(이하 “진료기록보관시스템”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-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<u>보건소장은</u>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음(제2항) (현행)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(개정) 보건소장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의2 (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)	×	○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인증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이미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이 수행 중이므로, 인증 항목 추가에 따른 신규 사업비 규모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－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인증 관리·운영 사업에 16억 4,300만원을 배정하여 인증기준 및 제도 관리·개선, EMR 인증 확산 운영, 심사인력 양성 및 신청기관 교육, 의료기관 EMR 표준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
2	안 제40조의2 (진료기록부등의 이관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40조의3 (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·운영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는 개정안 시행으로 휴·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부등¹⁾(이하 “진료기록부”)의 직접 보관이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이 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(이하 “진료기록보관시스템”)에 이관하는 물량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이관 비용을 추계

- 현행법 제40조의2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·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되,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²⁾이 정하는 바

1) 동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, 간호기록부,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말함

2)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0조의4(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)

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위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

- 다만, 보건소장이 넘겨받은 진료기록부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하는 것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이관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현행법 및 개정안 제40조의3제2항은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제출 의무화가 보관시스템 이관 건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움
- 이에 본 추계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 이관 범위를 ① 휴·폐업 의원급 의료기관 전수, ② 휴·폐업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전수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로 추계
- 현재 보건복지부는 “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(정보화)”³⁾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휴·폐업 의원의 진료기록 이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**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 이관 비용에서 현행 이관 지원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**
 - － 동 사업은 전체 휴·폐업 의료기관 중 이관을 요청한 의원급 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상의 전자문서 또는 비전자문서 이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그 외의 의료기관은 직접 보관 또는 보건소에 진료기록 서류나 컴퓨터 본체 제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⁴⁾
 - － 두 시나리오 모두 이관 지원 범위를 현행 의과에서 한의과, 치과까지 확대하되,⁵⁾ 현행과 동일하게 영상을 제외한 진료기록만을 이관하는 것으로 가정⁶⁾

1.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

2.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

3.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·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3) 2023~2024년 2년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, 2025년부터 시스템 고도화와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4)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에 따르면,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시스템(EMR) 중 점유율이 높은 EMR에 대한 연계 API를 개발하여 이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, 병원 및 종합병원의 EMR에 대한 API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의 이관이 어려운 상황임

5) 단,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외

6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EMR과의 연계가 중심으로, 영상 기록의 저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 또한 영상의 경우 전자문서 대비 훨씬 큰 용량이 요구됨으로 현시점에 영상기록을 포함하여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

- 본 추계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관 물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비용과 EMR 연계 모듈 개발 비용을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
 - 이관 물량 증가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에서 필요한 증설 규모와 방식⁷⁾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⁸⁾
 - 또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급보다 진료과목과 진료기록 서식의 종류가 많아 기관별 EMR 구성과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여 별도의 EMR 연계 모듈 개발비가 소요되나, 개발이 필요한 EMR 제품의 수와 개발 일정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제외
 - 이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결과를 상회할 수 있음
- 또한,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업 운영비용은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사업 운영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전담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 9,700만원, 실무협의체 및 사용자 교육에 1억 2,000만원을 편성하였음
 - 향후 이관 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관 건수와 소요 인력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해 이를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7) 예시로,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,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30년 폐쇄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8) 다만,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진료기록 이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당해연도 종별 휴·폐업 예상 의료기관 수에 이관단가를 곱한 총비용에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기존 이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
- (휴·폐업 의료기관 수) 매년 종합병원급 6개소, 병원급 155개소, 의원급 1,166개소가 휴·폐업 후 진료기록 이관이 필요한 것 예상되나, 이관기관의 범위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가정
 - (시나리오 1) 휴·폐업 의원급 의료기관 전수, (시나리오 2) 휴·폐업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전수
 -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휴·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최근 3년(2023~2025년) 평균 휴·폐업 의료기관 수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비율(45%)을 제외⁹⁾
 - 참고로, 진료기록부의 이관 의무를 법 시행 이후 휴·폐업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휴·폐업한 기관의 진료기록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
 - (이관 단가)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준용하여 진료기록 이관에 소요되는 단가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의료기관 종별 휴·폐업 의료기관 수 및 진료기록 이관비 단가

(단위: 개소, 만원)

구분	의원급	병원급	종합병원급
휴·폐업 의료기관 수	1,166	155	6
진료기록 이관비 단가	120	3,000	5,000

주: 1. 의원급 휴·폐업 의료기관 수는 대표자 변경 등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비율(45%)를 제외한 개소수임
 2. 의료기관 1개소 당 진료기록부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이며, 영상기록의 이관은 포함하지 않음
 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9)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“BPR/ISP 결과보고”, 보건복지부, “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2-1)” 재인용

[표 3] 휴·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이관 비용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시나리오1 : 의원급	1,399	1,399	1,399	1,399	1,399
시나리오2 :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	6,349	6,349	6,349	6,349	6,349

주: (시나리오 1) 의원급 휴·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, (시나리오 2)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 휴·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·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이관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5년간 총 20억 8,000만원~268억 3,000만원(연평균 4억 1,600만원~53억 6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시나리오 1: 휴·폐업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 전수 이관							
개정안에 따른 총 이관 비용(A)	1,399	1,399	1,399	1,399	1,399	6,995	1,399
보건복지부 기존 이관 비용(B)	983	983	983	983	983	4,915	983
추가재정소요 (C=A-B)	416	416	416	416	416	2,080	416
시나리오 2: 휴·폐업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 전수 이관							
개정안에 따른 총 이관 비용(D)	6,349	6,349	6,349	6,349	6,349	31,745	6,349
보건복지부 기존 이관 비용(E)	983	983	983	983	983	4,915	983
추가재정소요 (F=D-E)	5,366	5,366	5,366	5,366	5,366	26,830	5,3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